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4. 25.

제 안 자 : 송은섭 의원외

□ 수정 이유

○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, 국어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표준용어의 사용으로 조문 표기의 정확성을 기함

□ 수정 주요내용

○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①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(이하 "천년대종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- ② 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.
- 안 제4조 (대상시설) 제1호중

"높이 3.89m, 바깥지름 2.24m"을 "높이 3.89미터, 바깥지름 2.24미터"로 하고

- 동조 (대상시설) 제2호의 건축면적 및 건축 형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건축면적 : 70.56제곱미터
 - 건축형태 :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, 모로단청 1층

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제2조 ①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(이하 "천년대종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 - ② 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.
- 안 제4조 (대상시설) 제1호중"높이 3.89m, 바깥지름 2.24m"을 "높이 3.89미터, 바깥지름 2.24미터"로 하고
- 동조 (대상시설) 제2호의 건축면적 및 건축 형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건축면적 : 70.56제곱미터
 - 건축형태 :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, 모로단청 1층

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 수 정 안 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2조(명칭) 종의 명칭은 **제2조(명칭)** ① 종의 명칭은 충북천년대종(이하"천년대종"이라 하며, "종 및 충청북도천년대종 이하 "천년대종"이라 한다 오로 종각"을 포함한다)이라 한다. 한다. ② 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. 제4조(대상시설) 천년대종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 제4조(대상시설) "현행과 같음" 1. 종 : 1구 1. ••• - 규격 : 높이 3.89m, 바깥지름 2.24m - 규격 : 높이 3.89미터, 바깥지름 2.24미터 - 무게 : 21톤 - 재질 : 주석, 구리 2. 종각 : 1동 2. 종각 : 1동 - 건축면적 : 21평 - 건축면적 : 70.56제곱미터 - 건축형태 : 전통한식 목조 팔작지붕, 모로단청 - 건축형태 :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, 모로단청, 1층

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대종 및 종각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①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(이하" 천년대종" 이라 한다) 으로 한다.
 - ②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.
- 제3조(위치) 천년대종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55번지에 위치한다. 제4조(대상시설) 천년대종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종 : 1구
 - 규격 : 높이 3.89미터, 바깥지름 2.24미터
 - 무게 : 21톤
 - 재질 : 주석, 구리
 - 2. 종각 : 1동
 - 건축면적 : 70.56제곱미터
 - 건축형태 :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, 모로단청, 1층
- 제5조(관리) ① 도지사는 천년대종의 화재, 도난, 훼손, 멸실 등의 예방 및 기타 그 보존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.
 - ② 천년대종의 안내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원을 배치 할 수 있다.
- 제6조(타종) 천년대종은 제야, 3.1절, 광복절 행사에 타종하되 각종 기념일, 경축행사. 주요 민속일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타종할 수 있다.
- 제7조(타종 주관부서 및 타종대상자 선정) 천년대종 타종 주관부서는 기념일 등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며, 타종대상자는 타종 주관부서에 서 선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